■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의2서식] <개정 2023. 3. 20.>

# 납입확인서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연금계좌 취급자 | ① 사업자등록번호 | ② 법인명(상호) | ③ 대표자(성명) |
| | ④ 법인(주민)등록번호 | ⑤ 소재지(주소) | |
| 연금계좌 가입자 | ⑥ 성명 | ⑦ 주민등록번호 | |
| | ⑧ 주소 | ⑨ 계좌유형 | ⑩ 계좌번호 |

## 1. 연금계좌 납입명세 및 과세제외금액 확인 명세

| 확인 기간 | 년 월 일 ~ 년 월 일 |
|---|---|

| ⑪ 연도 | ⑫ 납입액(영 제40의2제2항제1호) | | | | ⑬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 중 인출액 | ⑭ 순납입액 (⑫-⑬) | ⑮ ⑬외 인출액 | ⑯ 영 제118조의3에 따른 전환 금액 | ⑰ 총납입액 (⑭-⑮) | ⑱ 총납입액 누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가목 | 나목 | 다목 | 합계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
## 2. 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명세

| 확인일 | ⑲ 사유 | ⑳ 확인처(계좌) | ㉑ 확인금액 | 사유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1. 영 제201조의10제2항에 따라 확인되는 분<br>2. 영 제201조의10제3항에 따라 확인되는 분 |
| | | | | |
| | | | | |
| 합계 | | | | |

| ㉒ 확인대상납입액(⑱-㉑) | |
|---|---|
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위와 같이 연금계좌 납입명세 및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연금계좌취급자 (서명 또는 인)

### 작 성 방 법

1. ⑨란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2. ⑪ ~ ⑯에서 납입액과 인출액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.
3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인출액란(⑬란 또는 ⑮란)에 적지 않고 ⑫ 납입액란(다목란 및 합계란)에서 공제하여 적습니다.
4. ⑯란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18조의3제1항에 따라 전환 신청된 금액을 적으며, 해당 금액은 ⑫납입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5. ⑲란에는 해당 계좌에서 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확인 사유를 구분(1 또는 2)하여 적습니다.
6. ⑳란에는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확인서를 제출받아 해당 계좌에서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한 금액이 있는 경우(사유 중 "2"에 해당) 다른 연금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7. ㉒란에는 해당 계좌의 납입액 중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1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계좌의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에 합산될 수 있는 금액을 적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